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공고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 (관창일반산업단지)
다. 기초 금액 : 6,021,170,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건축공사업	3,936,384,316 원	5,247,129,000 원
토목공사업	676,501,377 원	744,151,000 원
기계설비공사업	675,689,765 원	862,950,000 원
조경공사업	185,217,805 원	203,739,000 원
합계	5,473,793,263 원	7,057,969,000 원

- 라. 입찰 자격 :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추가 자세한 자격은 3.입찰참가자격 확인)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11,022.20㎡, 연면적 2,213.01㎡(지상1층 2,087.39㎡, 지상2층 125.62㎡)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사.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아. 입찰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9.09.(수) 18:00 ~ 2026.09.28.(월)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9.28.(월) 14:00	입찰집행관 PC

자. 기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본 사업 상황에 따라 합의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같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¹⁾)**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여야 함.
-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 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고압가스시설 제외)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계약건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²⁾ 실적 보유 업체여야 함.**
- 마.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 바.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 사.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69,973,640 원	2) 고용보험료	19,852,070 원
3) 국민건강보험료	59,933,489 원	4) 국민연금보험료	79,188,894 원
5) 퇴직공제부금비	38,344,095 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75,259 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832,860 원	8) 안전관리비	15,000,000 원
9) 품질관리비	9,317,449 원	10) 환경보전비	10,959,173 원
11)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958,975 원	12)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2,557,139 원
13) 안전관리보건대장	5,000,000 원	14) 비구조검토비	1,500,000 원

* 상해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바.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1)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8호의 범위(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천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³⁾을 적용함.

- 1)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종합공사 신인도(-1 ~ +4점)), 입찰가격 평가(70점)
-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⁴⁾ 실적**으로 함

-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야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 1) 개찰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음.
-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붙임 1], [붙임 2] 참조

4)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라항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

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인증연구본부 정병선 연구원\(010-4809-5624, bsjeong@katech.re.kr\)](mailto:bsjeong@katech.re.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 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 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 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 $\times$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 공사 B=1, 건축공사 B=2)
-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 $\times$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B를 적용한다.
-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 내지 6.2를 따른다.
- 6.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6.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6.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6.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6.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6.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쪽 계속)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별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별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민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민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5)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 21. 6. 30. 까지 부여)	+1

주)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평가 주 2) 및 2-1)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circ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